

의안번호	제16호
의결연월일	2020. 3. 23.

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3월 13일 김만중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20년 3월 2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김만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옛 교육기관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“논산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·육성”을 “논산시 향교·서원·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향교 및 서원”의 지원을 “향교·서원·서당”의 지원 목적으로 변경(안 제1조)
- “서당”의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)

-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의2)
- 현행 제3조의 지원대상을 “향교 및 서원”에서 “향교·서원·서당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